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0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장흥순, 김혜련, 장우윤,
김현아, 장인홍, 김문수,
신원철, 김종욱, 김진철,
오경환, 김구현, 이윤희,
박진형, 문형주, 맹진영,
이숙자, 박양숙, 권미경
의원(18명)

1. 제안이유

-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요금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요금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가스요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생략)</p> <p>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p> <p>3. (생략)</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도시가스요금</p> <p>3.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제2항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장흥순